

2023년 12월 1일

Preview

법원이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결정)을 내리면 그와 관련한 법적 기준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업무분야의 확장과 신기술의 도입으로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법원 판단은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법률기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재산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가상자산 분야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적 기준이 점차 마련되어가고 있는 분야로, 우리 법원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초로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가상화폐에 대한 최초의 강제집행 인용사건'의 주요 내용과 법원 결정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걸 이슈 Legal Issues

가상자산과 강제집행

민후 소식 Minwho News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에 대하여 매각명령 받아 전부 승소

- 가상화폐에 대한 최초의 강제집행 인용 사건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입)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공공기관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관련 주요국 법제 분석 법률자문

리걸이슈

가상자산과 강제집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16일, 압류된 가상자산 이더리움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하여 현금화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특별현금화명령).

매각 방법에 관하여는 매각일의 시장가격 등 적정한 가액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매각하는 방법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였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재산인 이더리움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팔아 돈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가상자산의 민사상 강제집행에 대한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은 분명해 보이나, 그렇다고 위 결정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느 경우든 무제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설부른 생각이다.

가상자산 본연의 성질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법원 결정의 배경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은 채무자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가상화폐 반환청구권이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프라이빗 키를 알 수 없는 이상 채무자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자체를 타인이 처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워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즉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위 사건에서는 압수물 이더리움 환부청구권)이라는 '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준성 파트너 변호사
T. 02-538-3427
E. wonjs@minwho.kr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면 제3자는 그 채권을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즉 채무자가 가상자산 반환요구를 하더라도 반환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제3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채무의 변제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가상자산은 동결된다. 동결된 가상자산에 대한 현금화의 가능성이나 그 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에 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먼저 제3자에게 동결되어 있던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인도명령을 내렸다. 이후 집행관에게 가상자산이 인도되었음을 확인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추심에 갈음하여 그것을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시장가격 등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였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현금화의 방법으로 지정한 것이다. 현금화가 완료되면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이제까지의 대세적 시각이었으며, 실제 이 결정 이전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다.

이번 결정은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나, 현행 민사집행법의 범주 안에서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을 명한 법원의 위 결정은, 가상자산에 명백히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오늘날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인다.

민후 소식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에 대하여 매각명령 받아 전부 승소

- 가상화폐에 대한 최초 강제집행 인용 사건 -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에 대하여 매각명령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들(의뢰인들)은 채무자가 운영하던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들로, 채무자 서비스가 해킹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을 대리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민후는 채무자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소송에 승소하고도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추가적인 대응을 요청하였고, 이에 민후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수사기관)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압수물 환부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후는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통해 압수물(가상화폐)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이끌었으며, 인도된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민후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재산상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과 가상화폐의 금전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인도된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매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상화폐에 강제집행 신청을 최초로 인용하는 매각 명령(특별현금화명령)을 내렸습니다.

민후 소식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입)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입)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윈도우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크로를 구상하였고, 이를 자신의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프로그램을 조합한 매크로를 통해 업무 결산 등의 절차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며,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을 변호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이 업무 자동화를 구상함에 있어 사용한 프로그램이 운영체제 내에 기본으로 포함된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실행이 용이함을 입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결산업무와 관련한 프로세스를 변형하거나 조작을 한 사실없이 절차대로 수행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후는 피고인에게 부여된 접근권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없으며, 서비스제공자 역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접근을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민후 소식

공공기관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관련 주요국 법제 분석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관련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를 분석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공공기관인 의뢰인은 2022년 3월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신설된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앱결제 강제방지법)과 관련한 해외 주요국의 입법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주요국인 미국과 일본, EU(유럽연합)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과 관련한 입법 동향을 분석함은 물론, 각 국가별 입법 또는 법 개정 동향을 진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민후는 미국과 일본, EU가 인앱결제 강제방지 규정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는지, 법제도 마련을 위한 동향이 있는지 등을 판단함은 물론, 법률안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 등을 진단하였으며, 국내법을 활용한 규제 방식의 실효성을 판단,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 전략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